

의안번호	2215990
의 퇴 인	안태준의원
회 답 일	2026.2.4.
추 계 번호	26B0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의2제4항 (교통수단 등 인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歩道)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 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함(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17조의2제4항 (교통수단 등 인증)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¹⁾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보도(歩道)

1)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

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도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²⁾ 의무대상 시설에 포함함에 따라 인증을 위한 수수료 및 심사료 납부와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개선·정비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도별 지정 규모, 해당 구역 내 보도 설치 및 정비 범위, 보도 설치 주체 및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공사면적 및 공사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 관련 기초 정보가 불확정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현행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지역 및 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광역철도,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이 해당함(동법 제17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
 - － 참고로,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사업개요³⁾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 (정의)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인증 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개축건축물(전부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함

□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누리집, (<http://www.koddi.or.kr>), 2026.2.3. 검색

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 인증수수료

- 면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는 가구당 면적 기준) 이하
- 가액: 임대 개시 당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이하
- 토지: 부수 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 현행법상 주요 제외 대상:
 -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도 제외
- 의무 사항 및 조건
 - 임대료 제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
 - 기한: 현재 규정상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만원)

구 분		지역 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 이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본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 비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286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원)

구 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 인 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효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효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일까지 1.25효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비 목	세부항목	예 비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 (A)	서류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현장심사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330천원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180천원	(A) × 0.1	
교 통 비(C)				
간접경비(D)		50천원		
합 계		2,060천원		
비 고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